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5 선고 2023가단33024 판결 [건물명도(인도)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㉔부분 50㎡를 인도하고,
나. 29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고,
다. 2023. 10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상복구를 제외하는 것으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박근규

별지